

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0. 4. 29 동두천시장의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0. 5. 6

다. 상정일자 : 제9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본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
제2차 본회의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및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 및 기금운영조례로 변경되고 조합의 명칭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“1급 내지 6급”을 “1급 내지 7급”으로 함.
- “경기도신용보증조합”을 “경기도신용보증재단”으로, “경기도신용보증조합 설치및운영조례”를 “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영조례”로 변경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본 개정조례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 및 동법시행령제14조 제3항 별표3에 의한 상이등급 구분이 확대되고, 경기도 신용보증 조합 설치및 운용조례가 경기도 신용보증 재단설립 및 운영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 생 략 ”

5. 토 론 요 지

“ 없 음 ”

6. 심 사 결 과

“ 원안가결 ”